

# 가칭 「전기안전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 실시 안내

기획관리팀 [문의 : 02)875-4471]

전기로 인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98년말부터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에 있는 가칭 「전기안전법」 제정(안)에 대한 여러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상공청회를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전력기술인께서는 '99년 7월 31일까지 협회 본부 기획관리팀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개최 안내 ♣**

1. 일 시 : '99. 7. 27 (화) 오후 2시
2. 장 소 : 협회 교육훈련원(구.한전 영등포지점)
3. 참석대상 : 협회 회원 및 전력기술인
4. 토의내용 : 전기안전법 제정(안) 토의

- 보내실 곳 : 가능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도착하여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FAX : [02)888-4474]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411-24 YPP빌딩 6층 기획관리팀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1999. . .  
발 의 자 : . . .  
○○○ 의원의 외 ○인

**1. 의결주문**

전기안전법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규모의 확대와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전력설비는 대형화 및 다양화 추세이고 이로 인해 전기재해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어 현행 안전관리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신기술의 출현 및 행정의 지방화시대에 대비하는 한편, 전기로 인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안전관리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술개발의 촉진과 활용 그리고 안전 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과 전기안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전기안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제4조)
- 나.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기재해예방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계몽·홍보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가 안전관리 기본목표에 따라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전기안전기술의 개발과 안전관리의 향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토록 함(안 제6조)
- 라. 전기의 생산·공급 및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저수지·전선로 및 기

타 설비에 대하여 시공 또는 공사감리 기간 중에 중대한 전기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기술기준과 설계도서 등에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으며(안 제27조제1항),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그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내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해당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7 조제2항)

사. 전기설비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전기설비의 사고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선진화된 전기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

법률 제 호

## 전기안전법(안)

전기안전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전기안전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안전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기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라 함은 전기의 생산·공급·사용상의 지장과 전기설비의 손괴 및 전기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감전·화재 등의 전기재해 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제조·제작·공사계획·설계·시공·감리·검사·점검과 유지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2.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특정 다목적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

량 또는 항공기 등에 설치되는 것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일반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를 말한다.

3.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4. "일반용 전기설비"라 함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5. "자가용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제2장 전기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3조【전기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안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 기술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5. 전기안전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기안전의 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전기안전 연구기관의 육성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안전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개발 등의 권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3. 전기안전 관련단체 등

**제6조【전기안전의 계몽·홍보 등】** 정부는 전기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계몽·홍보하여야 한다.

### 제3장 기술기준 등

**제7조【기술기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술기준 제정 등에 관한 심의·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기준의 준수 의무】** 전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설계·제조·제작·시공·감리·검사·점검·유지관리 및 운용 등을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자

2. 전기설비의 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원

3. 전기기계·기구를 제조·제작하는 자

4. 자가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5. 전기설비를 검사·점검하는 자

6.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9조【기술기준 적합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와 제1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나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대여 받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제4장 공사계획 및 시공·감리

**제10조【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수립 등】** 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은 다음 각호 1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2. 제1호 이외의 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국내의 규격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공사계획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사업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인가 및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에 관한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토 결과 그 내용이 기술기준에 위배되거나 전기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시공중의 안전관리 등】** ①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전기공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설계도서 등에 의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전기공사가 기술기준에 위배되거나 전기안전에 저해가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기공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 및 공사현장의 작업자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전기공사업자 등은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용품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표시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승인 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 대상품목이 아닌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감리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기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리업자가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감리업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공 또는 공사감리에 대한 조치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공 또는 공사감리 기간 중에 중대한 전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 경과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감리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설계도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전기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장 검사·점검

**제16조【사용전검사】** ① 전기사업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성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발전용보일러 및 터빈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계 및 기구를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①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의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반 전기사업자 및 특정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일반용 전기설비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술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될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 전기사업자 및 특정 전기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점검 또는 통지의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전기사업자 및 특정 전기사업자에게 점검 또는 통지의 방법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일반 전기사업자 및 특정 전기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⑤ 일반 전기사업자 및 특정 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여야 할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일반 전기사업자 및 특정 전기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점검】** 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전기설비를 제33조의 규정의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점검결과에 대하여 전기안전 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신청·기준·방법 및 전기안전 점검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전기안전관리자 등

**제2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휴지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사업장 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업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및 점검방법 등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과정·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22조【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 등】** ①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등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112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 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 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 또는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및 개인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이 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5. 영업정지 처분기간중에 영업을 계속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②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중별·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⑤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기안전관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수행한 전기안전관리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설비의 소유자나 점

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전기안전관리업자의 업무수행 기간은 그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등록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전기안전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의 양수·양도 등】** ① 전기안전관리업자가 그 전기안전관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전기안전관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전기안전관리업의 양수인·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전기안전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상속인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전기설비 유지관리

**제27조【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등】** 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성능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2. 전기설비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설비별 특성유지와 운용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3. 기타 전기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20조제2항 각호의 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내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전기안전관리규정】** 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전기안전관리규정 운영자(그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준수·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 또는 점검시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규정의 이행여부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전기안전교육】** ①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점유자·공사업자·감리업자 등은 종업원과 전기안전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안전진단】**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안전지도점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지도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제18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지도 점검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전기설비 사고조사 등】**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전기설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3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①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수수료
2.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 등의 수행을 위한 전기 사업자의 출연금
3. 전기설비검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관리비
4.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 점검비용 등
5. 차입금 및 기타 수입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출연시기·방법, 안전관리비 및 재난예방 점검비용의 부담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7인과 감사 1인이내로 한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연수원·연구원·지사 또는 지점과 기타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안전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자료수집·출판 및 배포
4. 전기안전에 관한 계몽·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검사 및 기술지원
6.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7. 기타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민법의 준용】**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장 보 칙

**제41조【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한 적용 제외】** 전기설비중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유지·보수·운전 및 보안에 관한 안전규제(인가 및 허가를 포함한다)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에 종사하는 자

2. 제18조·제1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 및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수수료 등】**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공사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자료의 요청】**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조사·검사·점검 및 유지관리 등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그 업무 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0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3.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을 등록한 자
4. 전기안전관리업자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제49조【벌칙】**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대리인이나 사용자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감리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한국산업규격 표시 대상품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전기용품을 사용한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점유자와 전기공사사업자
  2. 제18조제1항(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운영하지 아니한 자 및 동조제2항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로 작성·기록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

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의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본다.
- 제3조【전기설비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검사·점검·등록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검사·점검·등록 등으로 본다.
- 제4조【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전기안전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는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 제42조, 제45조, 제48조 내지 제54조의2, 제64조, 제65조제2항, 제65조의2, 제68조제2항 및 제3항, 제69조제7호, 제7의2호, 제70조제4호 내지 제5의3호, 제7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